

NIA

개인정보보호 주간동향



Contents

국내 주요뉴스

- 모든 공공기관 `정보보호 정밀진단` 받는다 1
- 행자부, 전국7만6000개 학원 개인정보 관리 점검 1

해외 주요뉴스

- 유럽위원회, 직장내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권고사항 발표 2

보고서 소개

- 미국 전문조사기관 Pew Research 센터, 스노우든 폭로 사건 이후 프라이버시 인식과 태도 변화에 대한 조사 보고서 발간 5

1 국내 주요뉴스

모든 공공기관 `정보보호 정밀진단` 받는다 (디지털타임스)

- 행정자치부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및 침해 예방 활동 등을 진단하고 기관 평가에 반영해 개인정보보호 수준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진단'을 실시하기로 함
- 2012년에는 189개에 불과했던 평가 대상은 2013년 289개, 2014년 472개로 늘었는데, 올해는 중앙부처와 전 산하기관, 지자체, 지방공기업까지 모두 평가 대상에 포함
- 중앙부처 산하기관은 2014년에 50곳에 한정해 시범 실시했는데,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산하기관이 많은데 비해 관리체계 구축이 미흡한 곳이 많다는 결과가 도출돼 올해 전 기관으로 확대해 실시

● 출처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5040902101060800001

행자부, 전국7만6000개 학원 개인정보 관리 점검 (전자신문)

- 정부가 학생과 학부모 개인정보를 다량으로 수집 관리하는 학원가 현장점검에 나섬
- 행정자치부는 13일부터 24일까지 전국 7만6000개 학원 개인정보 점검을 실시
- 행자부는 이번 현장점검에 앞서 교육부, 지방교육청, 한국학원총연합회 등 관련부처와 민관 협업으로 사전자율점검을 실시
- 이 결과 약 33%(2만400여개) 학원이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미흡사항은 즉시개선 혹은 개선 계획을 수립·제출했다

● 출처

http://www.etnews.com/pages/newsstand.html?mc=d_001_00001

② 해외 주요뉴스

유럽위원회, 직장내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권고사항 발표

● 개요

- 유럽위원회는 47개 회원국을 상대로 직원과 구직자의 건강정보, 작업장 내 대화 내용 모니터링 등 각종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자국의 법률을 따라야 한다는 원칙 등을 자세하게 설명한 권고사항을 발간

● 주요내용

- 본 권고사항은 1989년에 나온 권고사항을 개정한 것으로, 새로운 정보통신 기술로 인해 초래된 사생활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함
- 적용 대상은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으로, 직원들이 작업장에서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그리고 이유없이 간섭받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모든 ICT 디바이스가 적용됨
- 권고사항에는 직원의 개인정보가 적절하게 보호되고 있음을 증명하고, 직원 개인정보의 수집 및 저장방법에 대한 지침 제시방법 등 직원 개인정보 보장을 위한 세이프가드 포함
- 한편, 본 권고사항에는 회원국을 대상으로 개인정보처리에 대한 특별 권고사항을 제안하였는데, 이를 살펴보면,
 - 인터넷 또는 인트라넷에서 직원이 접속한 웹페이지를 모니터링하는 경우, 고용주는 특정 작업 방지를 위한 필터링 적용처럼, 예방적 조치를 우선적으로 제공해야 함
 - 회사가 사전에 열람 가능성을 공지한 경우 또는 다른 법률적 이유로 보안이 필요한 경우에만 고용주는 직원의 전자적 커뮤니케이션을 열람할 수 있음. 직장내에서 사적인 전자적 커뮤니케이션 내용은 어떤 경우에서도 모니터링해서는 안 됨
 - 직원의 활동과 행동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비디오 감시를 포함한 정보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예외적으로 매우 엄격한 조건에 따라 인정될 수 있음
 - 지문, 안면패턴 등의 생체인식 정보를 수집 및 처리하는 것은 고용주, 직원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 그러나 이 경우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사용해야 함
 - 직원이 자신의 업무역량, 생산성 또는 직무 능력에 대한 평가 정보에 접속할 수 있는 권

리를 보장해야 함

- 직원 또는 구직자의 업무적합성을 결정하기 위해 유전정보를 이용해서는 안 됨. 단, 유전 정보는 법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이용될 수 있음
- 직원의 건강정보가 해당 직원의 업무이행 능력과 직접적으로 연관될 경우, 타인 또는 다른 업무 관계자에 대한 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회사는 해당 직원의 건강정보를 보유할 수 있음

● 시사점

- 적법한 직원 모니터링 제도 마련 및 시행은 직원의 기본권 보장 측면은 물론 고객 개인정보를 엄격히 보호하는 직장내 문화 조성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
- 특히 개인 스마트기기를 직장내에서 활용하는 사례가 일반화되고,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등 사회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적절한 수준의 직원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

● 출처

<http://www.coe.int/en/web/portal/-/council-of-europe-issues-recommendations-on-the-protection-of-personal-data-in-the-workplace>

3 보고서 소개

미국 전문조사기관 Pew Research 센터, 스노우든 폭로 사건 이후 프라이버시 인식과 태도 변화에 대한 조사 보고서 발간

● 발간 배경

- 지난달 16일, 미국의 전문조사기관인 Pew Research Center에서는 2013년에 발생한 폭로 사건 이후 미국 국민들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인식과 태도의 변화를 조사한 Americans' Privacy Strategies Post-Snowden 보고서를 발표함
- 지난 2013년 미 국가안보국(National Security Agency, NSA)의 요원이었던 에드워드 스노우든이 폭로한 정부의 감시 활동이 폭로됨에 따라 미국 시민들의 디지털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인지와 행동 변화를 조사함

● 조사개요

- 에드워드 스노우든의 정부 감시 프로그램에 대한 폭로 사건이 있는지 약 2년이 경과된 후, 미국 국민은 이러한 감시 프로그램의 위험성을 체념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이에, 본 조사에서는 감시프로그램의 실상에 대하여 인지한 이후, 미국 시민들에 대한 생각과 이로 인해 변화될 수 있는 통신 습관과 온라인 활동의 변화에 대하여 조사를 하였음
- 본 조사를 위해 2014년 11월 26일부터 2015년 1월 3일까지 만 18세 이상의 성인 남녀 47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¹⁾

● 조사내용 및 결과

- 조사에 대한 분야는 크게 정부의 감시 프로그램을 인지함에 따라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방법과 해당 프로그램의 운영방법, 본 프로그램이 목표로 하는 사람들에 관한 견해로 나눌 수 있으며 세부적인 결과는 다음과 같음
- 먼저 정부 감시 프로그램에 대한 인지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부감시 프로그램을 통해 전화나 인터넷 사용의 모니터링 사실에 대한 인지 경험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0%가 한번 이상 들어본 것으로 조사됨

1) 설문은 전문패널그룹 운영 회사인 GfK 그룹의 패널에 등재된 국가 공식 온라인 조사 패널을 활용하였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pm 5.6\%$ 포인트임.

- 이들 응답자 중 31%가 자주, 56%가 가끔이라고 응답하였으며²⁾, 이 중 행동이나 프라이버시 전략에 대한 변화에 대한 질문의 응답 결과는 아래와 같음

① 정부 감시 프로그램에 대응하기 위하여 일부 행동의 변화가 나타난 것으로 드러남

- 본 프로그램을 인지하고 있는 응답자 중 34%가 정부로부터 자신의 정보를 숨기거나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나타남
- 예컨대, 소셜 미디어 상의 프라이버시 관련 세팅 변화(17%), 소셜 미디어 이용 자제(15%), 특정 앱의 회피(13%) 및 제거(14%), 온라인이나 전화 대신 대면 대화 이용(14%), 온라인 통신시 특정 용어 사용 절제(13%) 등으로 조사됨
- 이러한 조치를 취한 응답자의 대부분은 감시프로그램에 대한 인지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본 프로그램의 목적이 공공의 이익(public interest)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응답자의 25% 기술 플랫폼 이용 패턴을 “많이” 또는 “일부” 변경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기술 플랫폼의 항목별 세부 결과는 다음과 같음

구분	전자메일	검색엔진	SNS	핸드폰	모바일앱	SMS	유선전화	1개 이상
응답률	18%	17%	15%	15%	13%	13%	9%	25%

② 다수의 사람들이 온라인 통신이나 활동을 보호해주는 유용한 도구의 사용을 고려하거나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응답자의 54%가 온라인과 모바일폰 사용시 프라이버시 보호에 도움을 주는 도구 등을 찾기가 “일부” 또는 “매우” 어렵다고 응답하였으며 항목별 결과는 다음과 같음

구분	검색기록 추적방지	전자메일 암호화 SW	DoNotTrackMe 플러그인	프락시 서버	익명성 보장 SW
응답률	18%	17%	15%	15%	13%

③ 감시프로그램의 공익성과 관련하여 상반된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정부의 감시 프로그램 목적이 공익성을 보장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61%가 다소 신뢰하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대답하였으며, 37%가 보다 신뢰하게 되었다라고 응답함
- 또한, 공화당 지지자 또는 보수성향이 강한 응답자가 민주당 지지자 또는 진보성향이 강

2) 전혀들어보지 못했다고 응답한 수는 6%에 불과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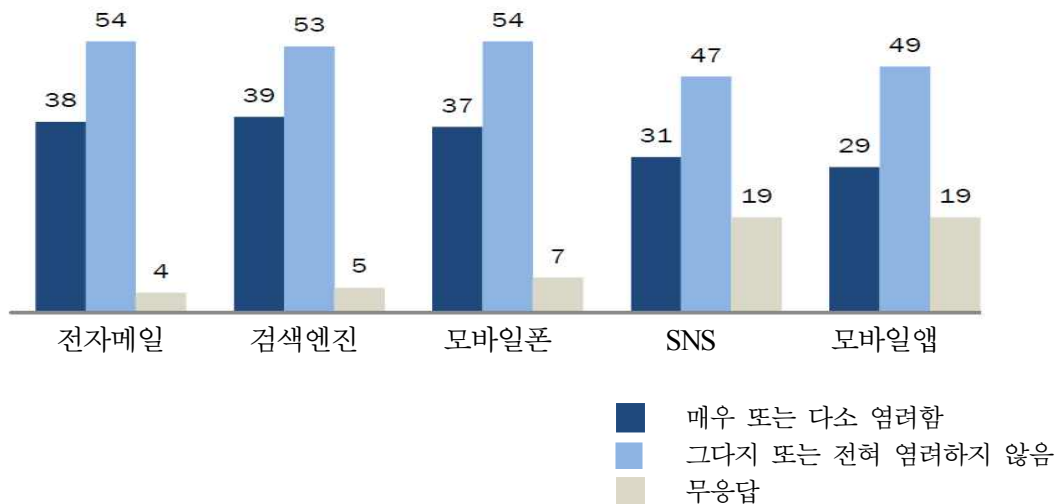
한 응답자보다 신뢰하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70% vs. 55%)

- 사법당국이 법 집행과 시민의 프라이버시권 보호간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48%가 그렇다라고 대답한 반면, 49%가 그렇지 않다라고 답변함
- 또한, 정부가 외국인, 해외 인사, 미국의 주요 인사 등을 모니터링 하는 것에 대하여 미국 시민들은 일반적으로 납득할 만한 것으로 여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체적인 모니터링 대상에 대한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음

대상	미국시민	제외시민	미국 주요인사	외국 주요인사	테러 의심자
납득	40	54	60	60	82
납득불가	57	55	38	38	15

④ 감시프로그램에 대한 프라이버시 염려(Concerns) 역시 서로 상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정부의 감시 프로그램에 대한 프라이버시 염려에 대한 조사 결과 응답자의 52%가 매우 염려 또는 다소 염려한다고 응답한 반면, 46%가 그다지 염려하지 않거나 전혀 염려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항목별 조사결과는 아래 그림과 같음



● 시사점

- 미국사회에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주요 이슈는 민간기업의 유출이나 법제도의 준수보다는 국가나 정부기관이 가지는 권한과 이에 대한 시민의 프라이버시 염려로부터 발전되어 왔음

- 특히, 지난 2013년 국가안보국의 개인정보 무단 수집 사건이 당국의 요원이었던 에드워드 스노우든에 의해 폭로되면서 해외 정부로부터의 비난 뿐만 아니라 미국 내 시민단체에서도 정부의 개인정보 무단 수집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기도 하였음
- 또한, 상기 조사결과를 보면 본 사건 이후 미국 시민의 프라이버시 관련 행동변화가 보이고 있고 이에 대한 프라이버시 염려에 대하여도 일부 우려를 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뿐만 아니라, 미 백악관에서도 소비자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정책의 변화도 꾀하고 있어 향후 미국정부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관행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됨

● 출처

http://www.pewinternet.org/files/2015/03/PI_AmericansPrivacyStrategies_0316151.pdf